

의안  
번호

23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11. 21.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이용진 의원 외 10명

나. 의안번호 : 제 234호

다. 제출일자 : 2023. 11. 07.

라. 회부일자 : 2023. 11. 14.

2. 제안이유

- 심화되는 저출산 상황에서 다자녀가정의 혜택 기준을 완화하여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북구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로 나이 제한을 삭제함.(안 제2조제5호)
- 나.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5조)
-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안 제14조제4항, 안 제16조제1항, 안 제20조제3호)
- 라. 출산 장려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공헌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28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3. 11. 03. ~ 2023. 11. 13.
  - 의 견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개요

- 본 개정안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며,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북구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 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안 제2조제5호는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출산 또는 입양으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을 “출산 또는 입양으로 양육하는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으로 조문을 변경한 것으로, 이는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된(2023. 6. 28. 시행) 사항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여 정의 규정을 정비한 것이며,

#### 〈다자녀가정 정의 규정 비교〉

| 현 행                                               | 개 정 안                                        | 서울시 조례                                       |
|---------------------------------------------------|----------------------------------------------|----------------------------------------------|
|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양육하는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 “다자녀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

- 안 제15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 1항1)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을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05)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의결·협의·자문 등(이하 “심의 등” 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등으로 구체화 것임.

- 안 제28조는 출산 장려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안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제20조제3호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임.

## □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본 개정안은 다자녀가정 기준을 정비하고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2. 심사수당 : 서면으로 심의 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